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0 . 30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 부 일 자 : 1998. 11 . 14 .
- 다. 상 정 일 자 : 1998. 11 . 14 제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의료관련법령의 위임사무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비용을 징수 함으로서 세외수입(수수료수입)의 증대를 기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가. 평창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징수 목적에 「입찰참가신청」을 추가
- 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증명)중 12호 다음에 12-1 「입찰참가신청」란을 신설
 - 입찰참가신청서 - 1건 10,000원(신설)
- 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증명)중 16호 다음에 17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란 신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1필지(년도별) 300원(신설)
 -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기재발급 — 1필지(년도별) 300원(신설)

라.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중 제2호 보건사회
관계의 수수료액을 조정

- 의료기관개선신고사항(명칭, 구조이전) 변경신고 1건 10,000원(개정)
- 치과 기공소 인정 1건 20,000원(신설)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5,000원(신설)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1건 20,000원(신설)
개설신고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20,000원(신설)
-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신설)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0원(신설)
(부속의료기관 포함)

4. 검토 내용

가. 주요개정내용은 평창군제증명등징수조례 제1조(목적)에 「입찰참가신청」을 추가
하고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입찰참가신청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보건
복지관계 7개 항목을 신설한 것임.

나. 관계법률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
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업체의 입찰참가신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참가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한 수수료
징수시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별문제점이 없음.